심의 번호: 준법설명 15-435 [심의일: 2015. 7. 17)

# 오라클 은행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퍼스트기업적금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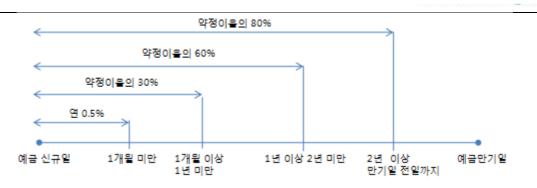
■ 상품명: 오라클 은행 금융 상품

■ 상품특징: 가입기간에 따라 확정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고수익 적금 상품

# 2. 거래 조건

➢ <u>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u>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용						
가 입 자 격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가 입 금 액	정기적립식: 계약액 기준 10 만원 이상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가입가능)			가입가능)			
	▶ 약정이율:						
						(2016.06.20 현재)	
가입기간, 이율		6개월 이상	<b>12</b> 개월 (	· -	텔 이상	36개월 이상	
(연, 세전)		12개월 미만	<b>24</b> 개월 [		텔 미만	60개월 까지	
	정기적립식	1.20%	1.30%	6 1.3	0%	1.30%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추가 우대 이율	없음						
	1. 2011.12.25 이전 가입 예금						
	1년 미만 경과분 1			1년	1년 이상 경과분		
					연 2.0%		
		연 1.0%					
	연 2.0%						
		열 1.0%					
중도해지 이율	_		7				
(연, 세전)	예금 신규일	예금 신규일 1년 미만		1년 이상 경과		1년 이사 경기	
	에는 연규를	•	. 5 45			15 0/8 814	
	2. 2011.12.26 이후 가입 예금						
	1 개월 미민	<u>1</u> 개월	이상	1년 이상			
	경과분	1년 미민	경과분	2년 미만 경기	과분 2	2년 이상 경과분	
	연 0.5%	약정이율	의 30%	약정이율의 6	60%	약정이율의 80%	
		L					



## 3. 2016.7.18 이후 가입 예금

1 개월 미만 경과분	1 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분	1 년 이상 2 년 미만 경과분	2년 이상 경과분
약정이율의 10%	약정이율의 30%	약정이율의 60%	약정이율의 80%



- ※ 개별 월부금마다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이율을 적용합니다.
- ※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u>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u>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1. 2015.4.19 이전 가입 예금

만기 후 <b>1</b> 개월 이내	만기 후 1개월 초과 1년 이내	만기 후 <b>1</b> 년 초과
1.5%	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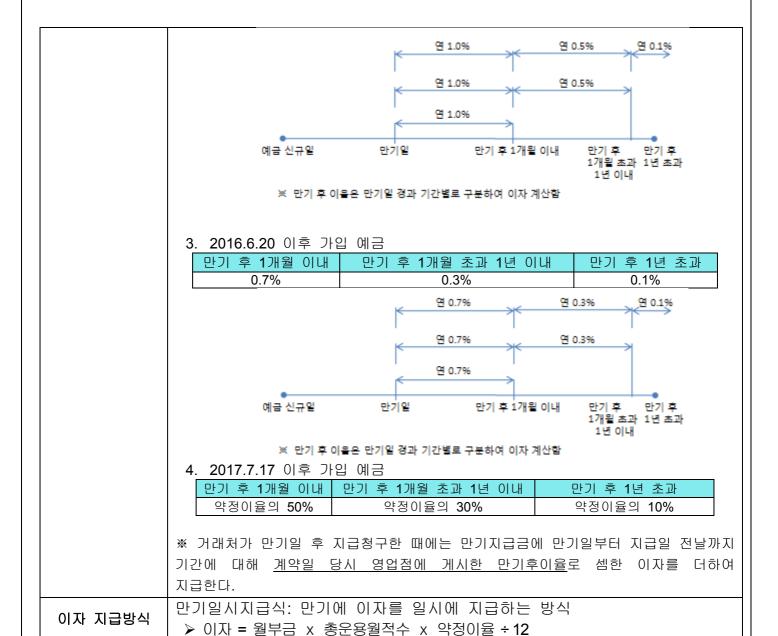
# 만기 후 이율 (연, 세전)



※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경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이자 계산함

## 2. 2015.4.20 이후 가입 예금

만기 후 1개월 이내	만기 후 1개월 초과 1년 이내	만기 후 1년 초과
1.0%	0.5%	0.1%



## 3.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

부 가 혜 택

계약의 해지

예금자보호여부

없음

해당

■ 정기적립식의 경우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 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 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 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음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법인명의적금의 경우 해지(중도, 만기)시 거래원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u>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퍼스트기업적금 특약

#### 제1조 가입대상

퍼스트기업적금의 가입대상자는 법인과 개인기업으로 한다.

# 제 2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계약액은 10 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 3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로 한다.

분 류 수 신	소 관 부 서 수신상품부
	제·개 정 일 자 2015-08-03

# 적립식예금약관

#### 제1조 적용범위

-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조 저축금의 입금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 4 조 이자 및 만기지급금과 지연입금

- 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 ②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③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 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 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

## 제 5 조 만기앞당김 지급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선 1 개월 안에 정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 제 6 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①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③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 제 7 조 자유적립식예금 특례

-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 으로 한다.
  -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 3 조, 제 4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조 및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8 조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한다.

# 제 9 조 기타 서비스

- ① 이 예금은 신청한 거래처에 한해 만기일에 이 다 이자를 본인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입출금
- ②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만기일이 늦춰진 경우에는
- ③ 이 서비스는 월저축금을 미납한 계좌, 만기기 자동한당되는 당심, 음편제어르고급, 주택청약부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Demo용 문서

발행하지 않고 입출금 내역을 전산 입력한 후 거래처에 거래내역서 또는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서 거래할 때에도 통장없이 거래할 수 있다.

####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불구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및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 입금

-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 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은행 또는 다른은행의 다른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 ③ <u>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u>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 ②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 제8조 증권의 부도

-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u>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u>. 다만, <u>통화불능 등 부득이한</u>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u>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u> <u>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u>.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 제9조 이자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 ② 은행은 <u>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u> <u>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u>
- ③ <u>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일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u>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 ④ <u>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확인서에</u>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확인서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 ③ <u>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u> 뺀 금액이다.

## 제10조 지급, 해지청구

-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비밀번호를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입력하고,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된 인감과 서명중 하나가 일치하면 지급할 수 있다.
-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에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u>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u>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 ①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거부하여 은행이 고객 확인 및 검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은 동 규정 제44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에 따라 거래처가 요청한 입출금 거래 또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 1. 개인

정보	자료
<b>신원정보</b> :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b>직장정보</b> : 직장명, 업종, 사업관련 정보(개인 사업자) 등 <b>추가정보</b> : 거래목적, 자금원천, 자산(부)의 원천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등) 행정정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장정보문서(재직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정보	자료
대표사정도, 합당, 설립폭석 등 추가정보 : 법인관계인(실소유자, 주요주주 및 임원) 정보, 회사 일반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문서(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대표자신원정보문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각종 인허가서 등)

②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거절하여야 한다.

#### 제13조 지급시기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제14조 양도 및 질권설정

- ① <u>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u>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 제15조 사고.변경사항 신고

-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해야 한다.
-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u>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u>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 한다.
- ③ 거래처는 <u>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신고사항</u>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u>전산통신기기를</u>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u>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u>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 하거나 지급한다.

#### 제17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u>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u> <u>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수 있다</u>.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u>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u>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면책

-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u>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u> <u>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u> <u>않는다.</u>

④ <u>거래처가 제1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u> <u>않는다.</u>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9조 수수료

-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 제20조 오류처리 등

- ① <u>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u>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u>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u>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21조 예금의 비밀보장

-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② <u>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u>·<u>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u>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2조 약관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② <u>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u> <u>거래처에 알린다.</u>
  - 1. 제1항에 의한 게시
  -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 5. 거래통장에 표기
  -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③ <u>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u>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u> 것으로 본다.

## 제23조 약관적용의 순서

-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 제24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 제25조 이의제기

<u>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u>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